

2024년 생활관 안전관리 계획

2024. 4.

한 남 대 학 교
[생활 관]

I

안전관리 계획 개요

고등교육법

제2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, 안전사고, 감염병의 확산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목표 및 기본방향

비전

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

목표

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

추진 과제

1

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사전 조치

- 위험별 대응 매뉴얼 수립
- 위험별 예방활동 및 사전 조치

2

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 문화 확산

-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인식 제고
- 법령에 규정된 안전 문화 확산

3

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·외 협력체계 구축

- 교내 비상연락망 구성 및 운영
- 교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□ 목적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
-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·개선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운영

<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>

구분	주요 법률
1. 재난	■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,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
2. 안전사고	■ 「고등교육법」, 「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
3. 감염병	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4. 범죄	■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형법」,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

2.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

일반현황

학교명	한남대학교	설립 구분	사립
주소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		
전화	042-629-7114	FAX	042-625-5874
		홈페이지	hannam.ac.kr
총장	이 승 철	대학안전센터장	이 은 구(직책 : 부총장)

생활관 교직원 및 학생 현황

학생 (명)	국내 학부생	외국인 유학생		합계	비고
		학부생/대학원생	어학연수생		
	980	77(34/43)	151	1,208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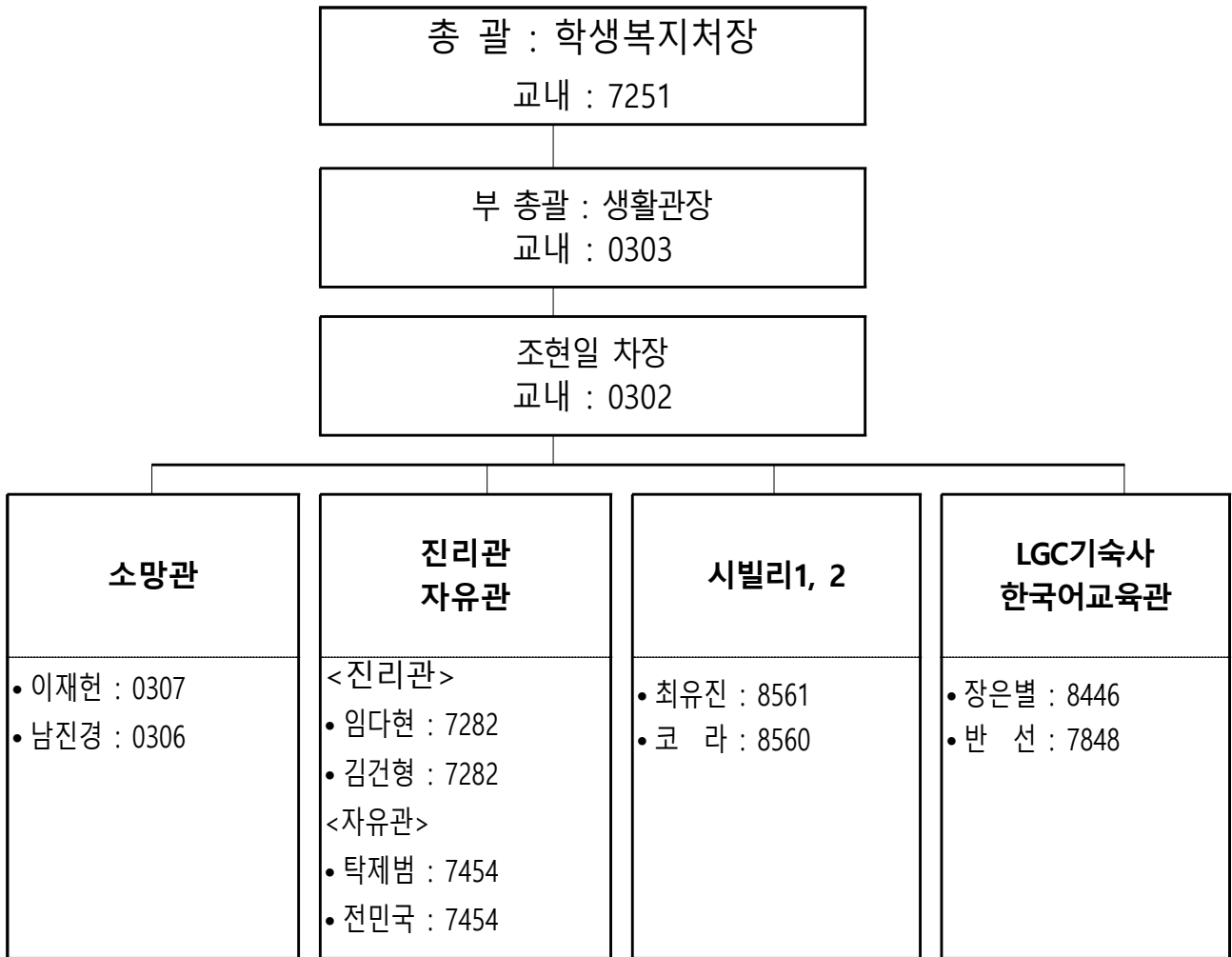
교직원 (명)	처장	관장	직원	사감	합계
		1	1	1	9

*현업 업무직원(11명) : 청소업무(8명), 시설, 설비, 전기(3명)

담당부서 현황

구분	위험유형	관리부서	협조부서
1. 재난	사회재난	생활관	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
2. 안전사고	시설안전	생활관	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
3. 감염병	코로나 19 등	생활관	건강관리센터
4. 범죄	일반범죄	생활관	학생복지팀
	성범죄	생활관	학생상담센터

□ 비상 연락망



□ 교내 주요 협업부서

부 서 명	업 무 책 임 관		교내 전화번호
	처 장 / 센터장	팀 장 / 담 당 관	
사 무 처	한상민 : 7263	김영경	7300
		김종원	7835
		최준용	7295
학생복지처	최지영 : 7731	곽노일	7759
		조하영	7283
	최지영 : 7731	노인석	7254
		진선애	7732

II

안전점검의 날 행사 (상급기관 추진사항과 연계)

1. 위험요소 및 주요 점검활동

구 분	위험요소	주요 점검활동
1학기	■ 개학기 안전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■ 감염병 예방 ■ 시설물 안전점검(해빙기 안전점검) ■ 도난사고 예방 ■ 성폭력 예방
2학기	■ 개학기 안전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■ 감염병 예방 ■ 시설물 안전점검(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) ■ 도난사고 예방 ■ 성폭력 예방
기 타	■ 명절기간(설, 추석)관리	■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활동

2. 주요훈련 내용

월별	훈련분야	훈련내용	비 고
4월	화 재 대피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화재 대피 훈련 - 생활관 사생 대상 화재 대처 능력 강화 	자 체
5월	지 진 대피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안전한국훈련 연계, 지진 대피 훈련 - 생활관 사생 대상 지진 대처 능력 강화 	자 체
10월	화 재 대피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화재 대피 훈련 - 생활관 사생 대상 화재 대처 능력 강화 	자 체
11월	지 진 대피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안전한국훈련 연계, 지진 대피 훈련 - 생활관 사생 대상 지진 대처 능력 강화 	자 체
기타	명절기간 도난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명절기간 도난 예방 교육 - 생활관 사생 대상 방법 및 도난 예방 능력 강화 	자 체

3. 안전점검 추진

구 분	시기	점검자	점검내용
수시점검	주 1회	층별 층장	점호 : 청소, 안전사고 예방
	수시점검	사감	청소, 화재예방, 안전사고 등
정기점검	3월, 6월, 9월, 12월	사감	청소, 화재예방, 안전사고 등

정기점검 후 결과 보고 : 내부품의(총장)

※ (붙임1. 생활관 시설물 안전환경 점검표), (붙임2. 생활관 월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표) 참조

Ⅲ

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

① 사회재난 안전사고

<담당부서 및 담당자>

담당 부서	직책	성명	연락처	비고
생활관	관장	신형근	0303	관리부서
	담당	조현일	0302	
시설안전관리팀	팀장	김영경	7300	협조부서
	담당	김종원	7835	

□ 위험요인

- **(화재·폭발)**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
 - 방화, 실화, 테러 등에 의한 (대형)화재 및 자연발화,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, 기타 폭발,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(대형)화재로 인한 대인·대물 피해발생
- **(건물붕괴)** 학생,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(기숙사)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
 - 구조적 결함, 부실시공, 노후화,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으로 인한 인적 사고 초래

□ 예방·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

- **(화재·폭발)** 불법·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, 소화기·소화전 등 소방기구·시설 설치·작동 상태 점검·관리, 화재경보 비상벨,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·행동요령 숙지
- **(건물붕괴)** 일상·정기점검,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

② 시설 안전사고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(관련 조항) 제6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등

※ (관련 기준) △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△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
△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△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

<담당부서 및 담당자>

담당 부서	직책	성명	연락처	비고
생활관	관장	신형근	0303	관리부서
	담당	조현일	0302	
시설안전관리팀	팀장	김영경	7300	협조부서
	담당	김종원	7835	

□ 위험요인

- (교내시설)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학교 건축물과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
 - 건물 구조·성능, 기계·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 구성요소 파손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

□ 예방·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

- (교내시설)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'교육시설안전 인증'을 적기에 취득하고, 안전·유지관리점검,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점검·관리를 통해 안전성 유지

③ 코로나-19 등의 감염병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(관련 조항) 제2조, 제7조, 제12조, 제13조, 제18조의2, 제29조, 제29조의3, 제23조의3, 제34조, 제35조

<담당부서 및 담당자>

담당 부서	직책	성명	연락처	비고
생활관	관장	신형근	0303	관리부서
	담당	조현일	0302	
건강관리센터	팀장	곽노일	7759	협조부서
	담당	조하영	7283	

□ 위험요인

- **(코로나-19)**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, 호흡기, 눈·코·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
 - 코로나 감염병 종식에 따른 일반 질병으로 관리
 - 계절성 유행병(감기, 독감)과 혼동
- **(기타 전염병)** 해외여행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
 -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안내 지시

□ 예방·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

- 대학의 각종 활동(수업·행사·자치활동·운동부 훈련 등) 전후 방역활동 강화, 예방수칙 준수 등 강조 필요
- 각종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,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, 유증상자 조기 발견·조치를 통하여 감염병 전파·확산을 방지

4-1. 범죄 : 일반범죄

폭력행위처벌법 & 범죄피해자 보호법

폭력행위처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(관련 기준) △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△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

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(救助)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담당부서 및 담당자>

담당 부서	직책	성명	연락처	비고
생활관	관장	신형근	0303	관리부서
	담당	조현일	0302	
학생복지팀	팀장	노인석	7254	협조부서
	담당	이찬구	7256	

□ 위험요인

- **(폭행 행위)** 생활관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
 - 학교 구성원간 폭행,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
 - (집단) 폭행, 협박, 강요, 체포, 감금, 상해, 공갈 등
- **(주거 침입)** 생활관 내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퇴거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
 -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·점거, 재물손괴,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 구성원의 신변 위협

□ 예방·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

- **(범죄예방)**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·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,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등의 사전대책 방안 마련
- **(대응조치)** 범죄피해자·목격자의 신고·비상벨 작동 시 생활관 사무실과 통합보안(KT텔레캡)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·조치 및 유관 기관(경찰서·소방서 등) 신고

4-2. 범죄 : 성범죄

양성평등기본법 & 성폭력처벌법

양성평등기본법

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성폭력처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(관련 조항) 제10조, 제11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등

<담당부서 및 담당자>

담당 부서	직책	성명	연락처	비고
생활관	관장	신형근	0303	관리부서
	담당	조현일	0302	
학생상담센터	팀장	노인석	7254	협조부서
	담당	진선애	7732	

□ 위험요인

- **(성희롱 행위)** 생활관 내에서 사생간 성적 언동,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
 - ※ 시각적 성희롱, 언어적 성희롱, 육체적 성희롱 등
- **(성폭력 범죄)**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, 협박, 위계,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
 - ※ (유사)강간, 준강간 (준)강제추행, 데이트성폭력, 스토킹, 통신매체 이용음란,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
 - 강간, 강제추행,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

□ 예방·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

- **(성희롱 행위)** 성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·대응 체계 구축·운영
- **(성폭력 범죄)**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·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-조사-심의-조치 등 전(全) 단계에 대한 체계적·종합적인 기반 조성
- **(대응조치)** 성희롱, 성폭력 발생시 해당 지원부서(학생상담센터)로 즉시 신고하여 신체, 심리 등의 치료 지원

I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.외 협력체계 구축

1. 대학내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

- 대학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, 위험 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부서간의 지원 및 대응
- 대학내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,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

2.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

□ 사회재난, 시설안전

1)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

기 관 명	상 황 실		비 고
	전 화 번 호		
대덕구소방서	042-270-1513	042-270-6156	구조구급과
중앙119구조본부	119		인명구조센터
한국전기안전공사	1588-7500		상황실
한국가스안전공사	1544-4500	042-485-0019	상황실
한국전력공사	123	042-333-0234	
대전한국병원	042-606-1000	042-606-1119	응급실
대전성모병원	1577-0888	042-220-9119	응급실
충남대학병원	1599-7123	042-280-8129	응급실
대덕구보건소	042-608-5499	042-608-4452~4453	감염병관리과

2) 상황실 운영 시

기 관 명	상 황 실		비 고
	전 화 번 호	e-mail	
상황실	0302		생활관
	7835		시설안전관리팀

□ 감염병

1)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

기관명	상황실		비고
	전화번호		
대덕구소방서	042-270-1513	042-270-6156	구조구급과
대덕구보건소	042-608-4552	질병관리본부 1399	감염병관리과

2) 상황실 운영 시

기관명	상황실		비고
	전화번호	e-mail	
상황실	0302		생활관
	7283		건강관리센터

□ 일반범죄/성범죄

1)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

기관명	상황실		비고
	전화번호		
대덕경찰서	042-600-4228	112	112사고접수 및 지령
동부경찰서	042-600-2009	112	112치안종합상황팀

2) 상황실 운영 시

기관명	상황실		비고
	전화번호	e-mail	
상황실	0302		생활관
	7256		학생복지팀
	7732		학생상담센터

건물명	점검호실	담당 차장	관 장	처 장

■ 점검일자 : 2024. . . ()

구 분	점 검 사 항	점 검 결 과		보 완 사 항
		이상없음	위험요소	
안 전 사 고 (전기, 가스, 소방 등)	전선, 랜선 정리는 잘 되어 있는가?			
	전기분전반 앞 물건 적재는 없으며 잠금상태가 되어있는가?			
	개인 전열기구/비인가전열기구를 사용하는가?			
	전기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가?			
	전기 멀티탭에 먼지, 분진 등 오염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?			
	부스터 등 가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가?			
	비상구 개방 및 대피로 확보, 방화문, 소화전 앞 적재물은 없는가?			
	출입문 정/부 관리자 표찰 및 비상연락망이 있는가?			
	화재시 대피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?			
	소화기, 소화전 위치 확인 및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는가?			
	벽, 천장, 창호 등 시설물의 파손, 크랙이 존재하는가?			
	주변환경에 안전사고 위해요소는 없는가?			
자 산 / 시 설 물	자산(물품, 기자재)관리 상태(파손, 분실 등)는 양호한가?			
	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가?			
	청소도구를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는가?			
에 너 지 (냉 / 난 방)	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있는가? 하계:적정냉방온도(26 도), 동계:적정난방온도(20 도)			
	수자원(물) 절약은 잘하고 있는가?			
청 결 상 태	취사 도구 및 실내 흡연은 없는가?			
	내/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는 잘하고 있는가?			
	각종 대외활동 후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는가?			
※ 호실 담당 : (서명)		※ 점검자: (서명)		

붙임 2

생활관 월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표

점검시기 (월)	점검 및 교육(훈련)내용					점검자		비고
	시설점검 (화재예방)	소방교육	소방훈련	성폭력 예방 등	기타	총장	사감	
3월	●	●	●	●		●	●	새 학기 개강 안전교육
4월	●					●		
5월	●			●		●		
6월	●						●	하절기 시설점검
7월								
8월								
9월	●			●		●	●	새 학기 개강 안전교육
10월	●	●	●			●		
11월	●			●		●		
12월	●						●	동절기 시설점검
1월								
2월	●							해빙기 시설점검

※ 소방훈련은 생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년 1~2회 실시함